

## 지원대상

아래 대기배출시설(1~5종) 운영 사업장

- 중소기업 기본법상 **중·소기업, 중소기업협동조합**
-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 시설(보일러, 냉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자

### <지원 제외 대상>
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-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
-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

## 지원조건

보조금을 지원받은 **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**하고,  
**사물인터넷(IoT) 부착(의무)**

## 지원금액

-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**설치 비용의 90%지원**  
(10%는 사업자 부담)

### <오염물질 상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>

구분	입자상물질 방지시설	가스상물질 방지시설		중소기업 협동조합 및
		가연성	RTO, RCO, VOC 처리	

## 사업절차

